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 .<br>(제 회) |      |

##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문화체육관광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24. 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개정이유

안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공연전까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(시행령 제9조제1항 5호, 6호 신설)
- 나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외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(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)
- 다. 재해대처계획 신고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항에 한해서 공연 시작 ‘3일전’까지 신고가 가능한 사항을 명시함(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조항 신설)
- 라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,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(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)
- 마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고 대상 공연에 대한 점검 권한보장과 신고 주체의 해당 점검 협조 의무를 명시함(시행령 제9조제5항 신설)

바. 안전교육과 관련 공연시작 이전 단계에서 교육수료가 완료될 수 있도록  
해당사항을 명시함(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2호 가목, 3호 가목 단서조항 신설)  
사. 인명·시설 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과 관련하여 공연중에 인명피해 우려가  
있어서 공연이 중단된 사항을 중대한 사고 사항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
(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4호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  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 
다. 기타 : 1) 입법예고(예정)  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예정

대통령령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#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

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무대설치 및 해체 관련 안전사항
6.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③ 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’를 ‘법 제11조제4항에 따라’로 한다.

제9조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‘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.’

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④ 제3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,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⑤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·확인하기 위하여

4. 공연중에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연 3일전까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제③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,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·확인하기 위하여 공연 예정 시설이나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들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. |
| 제9조의4(안전교육)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(생략)<br>2. 안전총괄책임자 | 제9조의4(안전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<br>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안전총괄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<br>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. -----<br>-----<br>다만,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(생략)<br>3. 안전관리담당자<br>가.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<br><신 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. (현행과 같음)<br>3. 안전관리담당자<br>가. -----<br>-----<br>다만,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공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|
| 나. (생략)<br>제9조의6(인명·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)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명·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.<br>1. ~ 3. (생략)<br><신 설> | 나. (현행과 같음)<br>제9조의6(인명·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 등)① (현행과 같음)<br><br>1. ~ 3. (현행과 같음)<br>4. 공연중에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 공연이 중단된 경우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문화체육관광부 공연·전통예술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   | (044) 203 - 2769 |